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43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고동진
박충권 · 권영진 · 임종득
최보운 · 이현승 · 김은혜
김재섭 · 김예지 · 이달희
안철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복잡·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도달했고,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 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u>5명</u>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 임으로 한다.</p> <p>② ~ ⑦ (생 략)</p>	<p>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 ----- -----<u>8명</u>----- -----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